

|  |
| --- |
| 사 업 명 |
| (1) 생계급여 (1131-300) |

1. 사업 코드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11 일반회계 | 2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복지정책관 |  | 080 | 081 |
| 명칭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  |  |  |  |
| --- | --- | --- | ---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100 | 1131 | 300 |
| 명칭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급여 | 생계급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서울40~60%,지방70~90%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년 예산본예산(A) | 2024년 | | 증감 |  |
| 정부안 | 확정(B) | (B-A) | (B-A)/ A |
| 생계급여 | 5,386,007 | 6,014,148 | 7,541,072 | 7,541,072 | 1,526,924 | 25.4 |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  |
| --- |
| 제7조(급여의종류) ①이법에따른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대한급여는수급자의필요에따라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하는것으로한다.  ③차상위계층에속하는사람(이하"차상위자"라한다)에대한급여는보장기관이차상위자의가구별생활여건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에서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에따른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차상위자에대한급여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내용등) ①생계급여는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와그밖에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하여그생계를유지하게하는것으로한다.  ②생계급여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그소득인정액이제20조제2항에따른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결정하는금액(이하이조에서"생계급여선정기준"이라한다) 이하인사람으로한다. 이경우생계급여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30 이상으로한다.  ③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은생계급여와소득인정액을포함하여생계급여선정기준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④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에위탁하여생계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고시에따라그선정기준등을달리정할수있다.  제9조(생계급여의방법) ①생계급여는금전을지급하는것으로한다. 다만, 금전으로지급할수없거나금전으로지급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물품을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의수급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지급방법을다르게정하여지급할수있다.  ③제1항의수급품은수급자에게직접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생계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그위탁받은사람에게이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보장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수급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④생계급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수급자의소득인정액등을고려하여차등지급할수있다.  ⑤보장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하여생계급여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보장기관은제28조에따른자활지원계획을고려하여조건을제시하여야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실시할장소) ①생계급여는수급자의주거에서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또는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수급자를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급여를실시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를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거실의임차료와그밖에거실의유지에필요한비용은수급품에가산하여지급한다. 이경우제7조제1항제2호의주거급여가실시된것으로본다. |

②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  |  |  |
| --- | --- | --- | --- |
|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 3,800→5,400만원, 중소도시 | 3,100→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09.1.1시행) |

- 2 -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농어촌 7,250→10,150만원(’09.1.1시행)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 아들기준 40%→30%(’09.1.1시행)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구간을 185%로 확대(’12.1.1시행)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13,300→22,800만원, 중소도시 10,850→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13.1.1시행)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 4.17% →1.04%(’13.1.1 시행)

- 시설운영의 소규모화를 고려하여 30인미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기준 신설(’13.1.1 시행)

- 대통령 공약사항(42) 및 국정과제(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소관부처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지속적용

|  |  |  |
| --- | --- | --- |
|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아들30% , 결혼한딸 | 15% →10% ),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 30% 신설(’20.1월) |

-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20.1월)

\* (대도시) 5400만→6900만/ (중소도시) 3400만→4200만/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중소도시) 6800만→9000만/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가구에노인또는한부모포함시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2 1 .1월),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전면폐지(‘2 1 .1 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 3 -

6. 주요내용

①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 |  |  | | --- | --- | |  | 지원 금액(2024예산) |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생계급여 | 보조 | 지자체 보조 | 7,541,072 | 서울40~60%  그 외70~ 9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7. 사업 집행절차

|  |
| --- |
|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시도(보조금 교부)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수급자 |

- 4 -